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2월 일 (제345회)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연월일	2016년 2월 일

#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6. 2. .  
제 안 자 : 행정문화위원장

## 1. 제안이유

- 감사원은 2015년 12월 15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미비’라는 제목으로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 또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유로 2015년 12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통보하여 농촌 지역 초중등학교를 살리기 보다는 폐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 교육부의 새로운 기준대로라면 충북에서는 초등학교 118개, 중학교 36개, 고등학교 7개 등 전체 484개교 중 33.3%인 161개교가 폐교되어야 한다.
- 또한 감사원의 권고안대로라면 충북은 10개 교육지원청 중 단양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의 2개 교육지원청이 통폐합되어야 한다.

-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문화의 중심지, 주민들의 소통과 어울림의 터전으로써 지역과 농촌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이 된다.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이 탈이 가속화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질 것이다.
- 따라서 농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통학거리와 농촌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백년대계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다.
- 또한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향후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매우 중요한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기구로써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감사원의 통보를 받아들여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거나 현재의 정책을 고수하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진정한 공교육을 포기하고 우리의 농촌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시든 농촌이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진정한 국민을 위한 공교육의 현실화, 미래농촌의 구심점이자 농촌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 2. 주 문

- 불임 건의문과 같음
- 불임 :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문

## 3. 건 의 처

- 청와대,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정의화 국회의장님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님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님 !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님 !  
황교안 국무총리님 !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

감사원은 2015년 12월 15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미비’라는 제목으로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15년 12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내려 보내 농촌지역 초·중등학교를 살리기 보다는 폐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새로운 기준대로라면 충북에서는 초등학교 118개, 중학교 36개, 고등학교 7개 등 전체 484개교 중 33.3%인 161개교가 폐교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의 권고안대로라면 총복은 10개 교육지원청 중 단양교육지원청과 보은교육지원청의 2개 교육지원청이 통폐합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은 권고기준일 뿐이며, 지역별 실정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라고 하지만, 인센티브 지원체계를 지역유형 중심 기준에서 학교규모 기준 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지원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문화의 중심지이며, 주민들의 소통과 어울림의 터전으로서 지역과 농촌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이탈이 가속화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질 것이다. 또한 사회양극화의 근원적 문제인 교육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통학거리와 농촌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백년대계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구심점이자 균형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기구로써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감사원의 통보를 받아들여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거나 현재의 정책을 고수하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자 의무인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가 진정한 공교육을 포기하고 우리의 농촌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도시든 농촌이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교육의 현실화, 미래농촌의 구심점이자 농촌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지역과 농촌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어촌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현재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농어촌을 위한 공교육의 현실화, 농어촌 문화의 구심점이자 농어촌 활력화의 원동력이 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도·농 교육환경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소규모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정책 등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6년 2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